

『三國史記』 「屋舍」條의 再考察

李 相 海

(성균관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I. 서론 : 연구의 동기와 목적

『三國史記』 屋舍條에 기록된 家舍制限의 내용은 통일신라시대의 살림집 및 그와 연관된 당시의 건축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문헌자료이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屋舍條는 살림집의 격식을 규제할 목적으로 제정된 일종의 법령으로서, 신분과 계층에 따라 집의 규모, 집 내·외부의 장식, 재료의 사용 등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¹⁾ 옥사조에 관한 연구는 일찍이 건축역사학자들에 의하여 많이 되어 왔는데, 그간 이루어진 주요 연구 결과를 연대순으로 열거하여 보면, 申榮勳 : 「三國史記에 보이는 屋舍條와 民家」(1969), 金正基 : 「文獻으로 본 韓國住宅史」(1977), 朱南哲 : 「韓國住宅建築」(1980), 金正基 : 「三國史記 屋舍條의 新研究」(1981), 申榮勳 : 「한국의 살림집」(1983), 申榮勳 : 「新羅統一期의 屋舍建築」(1984), 申榮勳 : 「韓屋의 造營」(1987), 朱南哲 : 「三國史記 屋舍條의 新研究」(1987), 朴彦坤 : 「古文獻의 해석·고찰에 따른 建築史學 전개의 再考小論」(1987), 金正基 : 「新羅의 住居生活」(1991), 李錦列 : 「朝鮮前期 住宅史 研究」(1991)

* 본 연구는 교육부 학술진흥재단의 '94 국비해외파견교수 연구지원 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진 연구결과의 한 부분임.

1). 『三國史記』 卷 第33 雜志 第2 屋舍條.

등이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에서 옥사조의 적지 않은 부분이 해석상의 쟁점이 되어 왔는데, 그 중에서도 옥사조에 나오는 용어에 대한 해석, 그리고 이러한 해석에 따른 당시 살림집의 형상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크게 쟁점이 되어 온 부분이다. 옥사조 해석이 학자들 사이에 서로 견해를 달리하는 중요한 이유는 당시 사용된 건축용어 및 일반 어휘에 대한 이해가 현재 부족하고, 실제로 남아 있는 살림집 유구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 많이 언급된 옥사조의 문헌적 가치에 대한 중복된 언급은 피하고, 기존에 이루어진 주요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해석상 쟁점이 된 내용과, 그리고 기존 연구에서 크게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옥사조 문면의 자구만으로 해석하는 차원을 벗어나, 관련 자료들을 참고로 하여 새롭게 고찰하여 보았다.

II. 본론 : 屋舍條 해석의 쟁점이 되는 부분 및 새로운 고찰

옥사조의 규제 내용에 관한 해석에 있어서, 쟁점이 되는 부분을 검토하고 동시에 주요 내용을 재고찰 하기에 앞서, 먼저 옥사조 全文을 게재하고, 그간에 이루어진 옥사조에 관한 연구 중에서 金正基의 「三國史記 屋舍條의 新研究」, 申榮勳

의 「한국의 살림집」(1)에 나오는 해당 내용과 「新羅統一期의 屋舍建築」(2), 그리고 朱南哲의 「三國史記 屋舍條의 新研究」의 연구 성과를 항목별로 표를 만들어 보인 후(표 1. 참조), 이를 바탕으로 쟁점이 되는 주요 내용을 분석하여 보도록 한다.

『三國史記』 屋舍條의 全文은 다음과 같다.

眞骨 室長廣不得過二十四尺 不覆唐瓦 不施飛簷
不雕懸魚 不飾以金銀鑄石五彩 不磨階石 不置三重
階 垣牆不施梁棟 不塗石灰 簾緣禁錦罽繡野草羅
屏風禁繡 床不飾玳瑁沉香

六頭品 室長廣不過二十一尺 不覆唐瓦 不施飛簷
重狀拱牙懸魚 不飾以金銀鑄石白鐵五彩 不置巾階
及二重階 階石不磨 垣牆不過八尺 又不施梁棟 不
塗石灰 簾緣禁罽繡綾 屏風禁繡 床不得飾玳瑁紫檀
沉香黃楊 又禁錦薦 不置重門及四方門 廐容五馬

五頭品 室長廣不過十八尺 不用山榆木 不覆唐瓦
不置獸頭 不施飛簷重狀拱花斗牙懸魚 不以金銀鑄石
銅鐵五彩爲飾 不磨階石 垣牆不過七尺 不架以梁
不塗石灰 簾緣禁錦罽綾絹緞 不作大門四方門 廐容
三馬

四頭品至百姓 室長廣不過十五尺 不用山榆木 不
施藻井 不覆唐瓦 不置獸頭飛簷拱牙懸魚 不以金銀
石銅鐵爲飾 階砌不用山石 垣牆不過六尺 又不架梁
不塗石灰 不作大門四方門 廐用二馬 外眞村主與五
品同 次村主與四品同 高句麗百濟屋舍未聞

II - 1. 屋舍條의 제정 시기 및 동기 에 관한 해석 문제

옥사조 해석에서 첫 번째로 쟁점이 되는 것은 옥사조의 가사제한령이 통일신라시대 이전에 제정된 것인가, 또는 통일신라시대 때 제정된 것인가 하는 제정 시기에 관한 문제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신라시대에는 왕족을 대상으로 한 골품을 聖骨과 眞骨로 구분하였다. 그런데, 옥사조에는 진골부터 시작하여 그 이하 신분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진골보다 신분이 높

은 성골은 가사제한에서 제외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옥사조 규정은 통일신라시대 이전에 제정되었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진골 출신 왕과 왕이 아닌 진골과의 차별성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통일신라시대에 왕을 제외한 신분에 대하여, 즉 진골에서 백성에 이르는 신분에 대하여 가사제한을 하였다는 견해가 있다.

제정 시기를 검토하기 위하여 『三國史記』 雜志 第2를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제2에는 色服, 車騎, 器用, 屋舍에 관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색복조 첫 머리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나온다.

법홍왕 때에 이르러 처음으로 6부 사람들의 복색에서 尊卑를 구별하는 제도를 규정하였는데, 그 때까지는 아직 동방 습속(夷俗)에 의거하였다. 진덕왕이 왕위에 있은 지 2년에 김춘추가 당나라에 가서 당나라 복식제도를 따르겠다고 청하니 당 태종이 조서로서 이를 허가하고 겸하여 의복을 주었다. 김춘추가 돌아와서 이를 실시하여 동방(夷)의 의복제도를 중국의 것으로 바꾸었다. 문무왕이 왕위에 있은 지 4년에 또 부녀들의 의복을 고치니 이 때로부터 의관 제도가 중국과 같게 되었다.²⁾

의복 제도가 중국의 것으로 된 연유에 대한 기사에 이어, 색복조에는 홍덕왕이 재위 9년(834)에 내린 교서가 나온다.

사람에는 윗사람과 아랫사람(上下)이 있고, 지위에는 尊卑가 있어서, 명칭과 법식이 같지 않고, 의복도 역시 다르다. 그럼에도 풍속이 점점 경박하여지고, 백성들이 다투어 사치와 호화를 일삼아 다만 외국 물건(異物)의 진귀한 것만을 숭상하고, 도리어 시골의 토산품(土產之鄙野)을 비속하다고 하여 싫어하니, 예절은 분수에 넘치는 데로 흐르고 풍속은 파괴됨에 이르렀다. 이에 옛 법에 따라 분명히 명하나니, 만일 짐짓 법을 범한다면 용당 떳떳한 형벌이 있을 것이다.³⁾

이상의 사실을 살펴볼 때 복식에 대한 원칙적

2). 위의 책, 色服條.

3). 위의 책, 色服條.

인 규제는 이미 통일신라시대 이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통일신라시대인 홍덕왕 때에 이르러 “예절은 분수에 넘치는 데로 흐르고 풍속은 파괴됨에 이르렀다.” 그래서 신분과 계급에 대한 통치질서를 엄격하게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것을 재정비하여 교시를 내렸음을 알 수 있다.

교시가 내려진 홍덕왕 9년이 되는 해는 장보고의 청해진이 설치(828년)되어 6년이 지난 때다. 이 때에 이르러 대외로 교역이 활발하여지고, 문호가 개방됨에 따라 외국산 사치품들이 신라로 밀려 들어왔을 것이다. 이 문호개방 조치에 따라 예절과 풍속이 파괴되어 급기야 사회는 신분상 혼란에 봉착하게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홍덕왕의 교시는 당시의 통치질서를 유지·강화하고 신분서열에 따라 의복뿐만 아니라 雜志에 나오는 수레·생활집기·가옥 등에 대하여도 엄격하게 차별하기 위하여 내려진 것으로, 그리고 수입품, 즉 사치품에 대한 강력한 통제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내려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⁴⁾ 따라서 屋舍에 대한 규제도 그 때까지 소략한 내용으로 전해져 오던 것을 기반으로 하여, 홍덕왕이 구체적인 문항으로 대폭 강화한 습을 새로 만들어 반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옛 법에 따라 분명히 명하나니, 만일 집짓 법을 범한다면 응당 떳떳한 형벌이 있을 것이다.”라고 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반영한다.⁵⁾

옥사조 제정 초기에 더하여 언급할 사항이 『三國史記』 권 제32 잡지 제1 祭祀條에 나온다. 제사조에 의하면 新羅의 宗廟制度는 그들이 金氏系 왕가의 시조로 삼은 미추왕(제13대왕, 재위 262-284년), 그리고 백제와 고구려를 평정한 공덕이 큰 무열왕과 문무왕을 대대로 제사를 끊지 않는 조상으로 삼고(世世不毀之宗), 여기에 親廟 들, 즉 아버지 왕과 할아버지 왕의 廟 들을 합하여 五廟를 만들어 제사지내는 것으로 되었었고, 또 명산 대천에는 제사지내면서 천지 신명에는 제사지내지 않았었다. 이는 王制에 의하여 天子는 천

4). 김성호: 『중국진출 백제인의 해상활동 천오백년』, 189-192쪽에는 당시의 시대상황이 새롭게 조명되어 있다.

지 신명에 제사를 지내고 七廟이지만, 諸侯는 그의 국내의 명산 대천에 제사를 지내며 五廟라 하였기 때문이다.⁶⁾

이러한 제도는 모두 이른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정립된 제도이다. 宗廟制度와 함께 屋舍制度도 王制와 연관하여 해석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 『三國史記』가 유학자 金富軾에 의하여 儒家의 안목으로 쓰여진 사실에 더하여, 통일신라시대 지배층의 통치구조는 天子가 아닌 諸侯의 격에 맞는 것으로 정비되어 갔을 것이고, 건축의 格도 제후의 것에 준하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옥사조의 규정도 이러한 제도적인 맥락을 같이하여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II - 2. 室長廣에 관한 해석 문제

옥사조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각 신분별로 제한을 한 ‘室長廣’에 관한 해석 문제에서 먼저 ‘室’에 관한 기준의 해석을 살펴보자.

지금까지 해석상의 쟁점은 ‘室’을 하나의 방으로 볼 것인가, 또는 집 한 채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김정기·주남철은 ‘室’을 집, 가옥을 뜻하는 房屋으로 해석하고, 室은 사람이 들어앉는 방 한 칸이 한 채이며, 당시의 건물을 單一室 單一建物로 추정하였다. 특히 주남철은 室이 房이라는 해석을 벗어나 室이 곧 집 한 채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한 채는 하나의 방으로 이루어진 單室 구조는 아니고 필요에 따라 間을 막은 것으로서 기능에 의한 공간분화가 이루어진” 주택으로 보았다.⁷⁾

그런데, 신영훈은 “室을 棟으로 보느냐, 구획된 한 柱間으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은 달라”진다는 주서를 달고 있고,⁸⁾ 또 일정한 크기의 “면적을

5). 홍덕왕은 사치금지 다음해(835)에 서거하였다. 홍덕왕의 서거는 바로 신라 하대의 왕위쟁탈과 직결되는데,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옥사조의 규정이 잘 지켜지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6). 『三國史記』 권 제32 잡지 제1 제사조에 의하면 시조인 혁거세는 신라 종묘에 받들지 않았었다. 박씨 성이기 때문일 것이다.

7). 주남철 : 「三國史記 屋舍條의 新研究」, 382쪽.

구 분	김정기	신영훈 (1)	신영훈 (2)	주 남철
室長廣	방의 길이와 넓이	실 규모, 정면과 측면의 길이	실 넓이	집 한 채의 전면과 측면의 길이
山榆木	산느릅나무	산유목	산유목	산느릅나무
藻井	격자천정		우물반자	짜 올린 천장
唐瓦	막쇠기와	막새기와	막새기와	막새기와
獸頭	귀면화	수두	수두	龍頭나 驚頭
飛簷	부연	부연	부연	부연
重欵 拱牙	중첩된 두공, 즉 二出目	오랑집 공포	종보 얹는 오랑가와 공아의 결구	오랑집 공포
花斗牙	草棋 또는 翼棋	화두아(공포의 일종)	종보 얹는 오랑가와 화두아의 결구	화두아
懸魚	현어	현어	현어	현어
鑑石	精良한 自然銅	유석	유석	놋쇠(황동)
銅鑼	동랍	동랍	동랍	동랍
白鐵	백랍	백랍	백랍	백랍
五彩	단청	오채	오채 단청	단청
階石	기단석	댓돌과 섬돌	섬돌, 댓돌	계단
階砌	기단이나 계단에 사용된 석재	댓돌과 섬돌 · 주춧돌	댓돌	섬돌
山石	冶石된 돌	산석	산석	돌(산석)
巾階	장식된 계단과 기단	좌우의 소맷돌	좌우 소맷돌	소맷돌
三重階	삼중기단(3단의 기단)	세벌대	세벌대	계단 세 폭을 나란히 놓은 것
二重階	이중기단	(섬돌) 두틀	두벌대	계단 두 폭을 나란히 놓은 것
垣牆	담장	담장	담장	담장
梁棟	보와 마루도리를 架構한 회랑	서까래를 걸은 것	서까래 건 마루 있는 행각	둥근 나무를 수평으로 꽂아 장식한 것
梁	보	서까래를 건 것	梁을 건 것	둥근 나무를 수평으로 꽂아 장식한 것
石灰	석회	강회(생석회)	석회	석회
廉緣	발 가장자리	발의 전	발의 가장자리	발 가장자리
錦罽繡野草羅	비단이나 모직천 또는 무늬 놓인 얇은 비단 천	비단으로 둘린 (발의 전)과 비단으로 만든 방장	비단, 음(罽), 수놓은 비단	錦羅, 國繡羅, 野草羅
罽繡綾	모직천이나 수놓은 비단, 무늬 있는 비단	비단을 두른(발의 전)	罽와 繡綾	罽繡綾
錦罽綾絹緞	비단 모직천, 무늬 있는 비단 굵은 생사로 찬 비단	헝겊으로 치장한(발의 전)	錦,罽, 縷, 絹, 緞	錦罽緞, 繡綾絹緞
屏風	병풍	병풍	병풍(방장)	병풍
床	寢臺, 椅臺(床)	상	상	바닥
玳瑁	대모	대모	대모	대모
紫檀	자단	자단	자단	자단
沉香	침향	침향	침향	침향
黃楊	회양목	황양	황양목	회양목
錦薦	비단자리	비단이불	비단 이불	비단자리
重門	겹문	다락문(樓門의 종류)	樓門	樓門
大門	三門	대문	대문	대문
四方門	집 사방에 설치된 문	외곽 울타리에 사방으로 낸 문	사방문	사방의 (대)문
廡	마구간	마굿간	마굿간	마굿간

표 1. 『三國史記』 屋舍條에 대한 기존의 주요 해석 비교표.

8). 신영훈: 「韓屋의 造營」, 25쪽. 신영훈: 「한국
의 살림집」, 197-8쪽.

身分	室用材 및 天井		지붕 裝飾, 처마 및 構包						裝飾			階			垣牆			室內 治裝 및 施設				門			廄							
	室長廣	山榆木 藁井	唐瓦	獸頭	飛簷	重橫花斗牙	拱牙	懸魚	金銀	鐵石	白鐵	銅鐵	五彩	階石	階砌	巾階	三重階	二中階	高이	梁棟	梁	石灰	簾線	床屏	玳瑁	紫檀	沉香	黃楊	錦蘆	重門	大門	四方門
眞骨	不得過 24尺			不 覆		不 施			不 雕	不 雕			不 磨		不 置			不 施	不 塗	禁 錦 野草羅	禁 繡	不 飾	不 飾									
六頭品	不過 21尺			不 覆		不 施	不 施		不 施	不 施	不 施	不 施	不 磨		不 置		不過 8尺	不 施	不 塗	禁 繡	禁 羅	不 得 飾	不 得 飾	不 得 飾	不 得 飾	禁	不 置	不 置	容 五 馬			
五頭品 (外眞 村主)	不過 18尺	不 用		不 覆	不 置	不 施		不 施	不 施	不 施	不 施	不 施	不 磨				不過 7尺	不 架	不 塗	禁 錦 綢 絹 緞								不 作	不 作	容 三 馬		
四頭品 (次 村主) 百姓	不過 15尺	不 用		不 施	不 覆	不 置	不 施		不 施	不 施	不 施	不 施	不 磨		不 用 山石			不過 6尺	不 架	不 塗									不 作	不 作	容 二 馬	

표 2. 『三國史記』 屋舍條의 屋舍制限 내용 일람표.

가진 방이 한 채로 구성되는 것인지, 아니면 室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그런 실이 한 채에 여러 間 잇대어져 있어서 결국에는 장방형의 평면을 구성하게 된 것이었는지 분명하지 않아 여러 가지 의문을 남기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⁹⁾ 평면이 정방형이면 사모지붕이 되는데, 그런 집이 별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여러 유구에서 발견된 고구려 시기의 살림집 터가 가름한 一자형의 집인 점을 들어 “삼국사기 옥사조에 기록된 사방 15척 · 18척 · 21척 · 24척은 하나의 단위로, 그것의 몇 마디(節)가 연결되어 屋을 구성하는 큰 집이 되었던 것이라고 해석함이 온당하겠다.”고 주장한다. 즉, 그는 “삼국사기의 실의 장광의 규격은 1간의 단

위였다”고 추정하였으며, 「新羅統一期의 屋舍建築」에서는 室은 집의 평면구성 해석의 관건이라고 언급하면서, 당시의 가옥은 “정방형 평면에 집짓는 일이 쉽지 않다는 구조상의 제약을 감안하면 一室이상이 連于되어 있었다고 믿는다. 一棟에 數室이 있었다.”고 해석을 하였다.¹⁰⁾

이상의 견해는 ‘室長廣’의 자구에 관한 해석과 직결된다. 이에 대하여 김정기는 ‘室長廣’을 ‘방의 길이와 넓이’로 해석하였고, 신영훈은 ‘실(室) 규모’로서 ‘정면과 측면의 길이’로 해석하였으며, 주남철은 ‘집 한 채의 전면과 측면의 길이’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해석에 대하여 박언곤은 ‘棟의 한변 길이의 제한’으로 해석하였다.¹¹⁾

9). 신영훈: 『한국의 살림집』, 251-2쪽.

10). 신영훈: 『新羅統一期의 屋舍建築』, 63쪽.

‘실장광’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위하여 무엇보다 먼저 ‘室’의 용례를 재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다. 일찍이 중국에서는 거주용 건축을 지칭하는 용어로 ‘宮’ 또는 ‘宮室’이라는 어휘를 사용하였다.¹²⁾ 그러다가 秦나라에 들어서서 황제의 거처와 구별짓기 위하여 ‘宮’과 ‘室’을 구분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특히, 秦漢 이후 ‘宮’은 제왕이 거주하는 곳으로, 귀족, 사대부가 거주하는 곳은 ‘室’, ‘宅第’로 지칭되었다. 그러나 이들 건축의 배치 원리는 원칙적으로 같았다. 택제의 ‘前堂後室’ 제도, ‘궁’의 ‘前朝後寢’ 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택제의 ‘前堂’이나 궁의 ‘前朝’은 賓客을 접하거나 신하를 맞는 곳, 정사를 처리하는 곳을, 그리고 택제의 ‘後室’이나 궁의 ‘後寢’은 家屬이나 후妃가 일상 거주하는 곳을 뜻한다.¹³⁾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살림집의 ‘後室’은 정침을, ‘前堂’은 바깥채, 즉 사랑채를 뜻한다.¹⁴⁾ 정침은 안채(內室)이므로 상대적인 건물이 있다는 의미를 지녔다.¹⁵⁾ 옥사조의 ‘室’ 역시 살림집의 정침에 관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실’을 정침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識余纂」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識余纂」에는 “人家居室 自門而庭 自庭而堂 自堂而室 堂爲賓客會集之所 又有正室 有燕室 飲食作息于是乎”라고 하고 있다. 여기서 언급하는 ‘室’은 정침이고, ‘堂’은 바깥채, 즉 사랑채다. 옥사조에 나오는 ‘실’을 정침에 관한 규정으로 보게 되면, 정침의 크기를 규정하면 다른 건물의 크기도 거기에 따라 자연스럽게 정해지게 된다.

다음으로 중요한 사항이 ‘室長廣’ 자구를 어떻게 끊어서 읽느냐 하는 문제다. 지금까지는 ‘실장광’을 ‘室의 長廣’으로 끊어서 읽고, ‘장광’이 무엇을 지칭하는 가에 주목하여, 주로 ‘장광’의 해석에 치중하여 왔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자구는 ‘長廣’이 아니라 ‘廣’이다. 『辭海』에 의하면, ‘廣’은 ‘寬度’의 뜻이 있는 것으로서, ‘廣輪’과 통한다고 명시하였다. 또 『康熙字典』에 의하면, ‘廣輪’은 『周禮』 「地官」 大司徒條 “以天下土地之圖 周知

11). 박언곤: 「古文獻의 해석·고찰에 따른 建築史學 전개의 再考小論」, 328쪽.

九州地域廣輪之數”에 나오는데, 馬融은 이를 “東西爲廣 南北爲輪”이라고 주석 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廣’은 ‘寬度’, 즉 ‘너비’를 뜻한다.

‘너비’와 연관하여 살펴 볼 자구 ‘廣’은 이미 잘 알려진 『周禮』 「考工記」 營國制度에 “匠人營國 方九里 旁三門 國中九經九緯 經涂九軌 左朝右社 面朝後市 市朝一夫 夏后氏世室 堂修二七 廣四修一 五室 三四步 四三尺”으로 나온다. 이중에서 “夏后氏世室 堂修二七 廣四修一”는 “夏后氏의 世室은 堂의 남북 방향의 길이(修)는 14 (2 x 7 = 14) 步요, 너비(廣)는 修보다 4분의 1이 더 많으니 17보 반 (14 + 14/4 = 17.5) 이었다.”로 번역할 수 있다. 여기서 ‘廣’은 물론 건물의 ‘너비’를 뜻한다.¹⁶⁾ 李明仲이 편찬한 『營造法式』 卷3 取正條에도 부재의 넓은 쪽의 寬度는 廣, 좁은 쪽은 厚라고 부르고 있다.¹⁷⁾

따라서 ‘室長廣’은 ‘室長의 廣’ 즉 ‘室長의 寬度’로 해석해야 한다. 건물의 前面 길이인 室의 길이는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室의 측면의 길이, 즉 깊이는 당시의 구조·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옥사조에서는 ‘室長의 寬度’만 제한하였다고 해석해야 한다.¹⁸⁾ 예로서, 진

- 12). 『爾雅·釋宮』에는 宮謂之室 室謂之宮이라고 해석되었다.
- 13). 『周禮』 「考工記」에서 제왕 궁실에 관하여 언급할 때 “內有九室 九嬪居之 外有九室 九卿朝焉”이라고 한 것은 바로 前堂後室, 前朝後寢 제도를 뜻한다.
- 14). 안동 하회마을의 養真堂, 忠孝堂, 월성 양동마을의 書百堂(손동만가옥) 등과 같은 사랑채의 당호는 ‘前堂後室’의 ‘堂’과 맥락을 같이한다.
- 15). 신영훈: 앞의 논문, 63쪽.
- 16). 『周禮正義 匠人注』에서도 “三四步 室方也 四三尺 以益廣也”로 注하였다. 여기서 ‘廣’도 ‘너비’로 해석함이 옳다. 賀業鉅는 「考工記營國制度研究」 25쪽에서 ‘修’를 ‘南北向之長度’로 해석하였다.
- 17). 李明仲: 「營造法式」 取正條에 “ . . . 高三尺 廣三寸 厚二寸 . . . ”로 나온다.
- 18). 신라시대의 半墻文樣墻에 보이는 건축을 보면 (그림 1. 참조), 실제로 신라시대의 집은 전면 너비가 길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신영훈·김동현 등 편저: 「新羅의 기와」, 301쪽의 실례들

골에 대한 규정인 “眞骨 室長廣不得過二十四尺”은 “진골의 정침의 전면 길이는 24척을 넘어서는 절대 안된다”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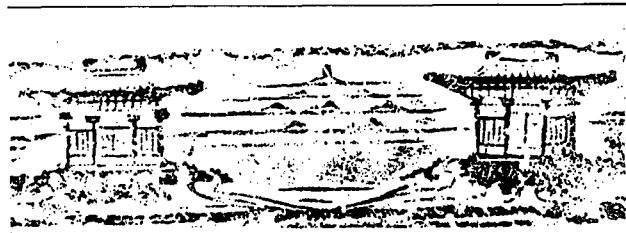


그림 1. 신라시대의 半博文樣搏에 나오는 집
(출처 : 신영훈·김동현 등 편저: 『新羅의 기와』, 301쪽)

II - 3. 唐瓦 · 獸頭 · 懸魚의 해석 문제

옥사조의 “不覆唐瓦”(“唐瓦로 지붕을 덮지 못한다.”) 규정은 진골·6두품·5두품·4두품에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온다. 그만큼 ‘당와’는 신분상의 위계를 나타내는데 중요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당와’에 대하여는 많은 연구자들이 ‘唐의 기와’, 또는 ‘당에서 수입된 기와’가 아닌 ‘당 양식을 본 뜬 기와’로 간주하여 ‘瓦當’인 ‘막새기와’로 해석하였다. ‘당와’를 당나라에서 수입한 ‘일반기와’로 보기 어려운 이유는 5두품·4두품·백성들의 지붕에 ‘獸頭’를 설치하는 것을 금하는 규제 내용이 나오므로, 수두는 당연히 기와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에서 ‘瓦當’은 이미 戰國時代, 漢代에 사용되었고, 唐代에 들어와서는 상당히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唐瓦’ 사용을 규제한다는 것은 그것과 對가 되는 기와, 즉 ‘일반기와’의 사용은 허용하였음을 뜻한다. 옥사조에 의하면, ‘일반기와’는 진골에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사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옥사조의 ‘당와’는 ‘일반기와’가 아닌 ‘高質의 기와’를 뜻했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高質의 기와’야말로 곧 신분상의 차별성을 나타내는 것이

이 그러하다.

었기 때문이다. 당나라 때 高質로 쳤던 기와는 ‘瓦當’이 아니라 ‘核桃油한 기와’였다. ‘核桃油한 기와’란 곧 ‘琉璃瓦’를 지칭한다. 반면에 유리와가 아닌 보통기와, 즉 일반기와는 ‘青搨瓦’라고 불렸다. 중국에서 琉璃瓦는 황색을 가장 존귀한 것으로, 녹색을 다음의 것으로 쳤으며, 오직 宮殿廟宇에만 사용이 가능하였다.¹⁹⁾ 보통 민가에서는 青搨瓦밖에 사용할 수 없었다.²⁰⁾ 특히 당나라 때 유리와는 처마, 추녀와 용마루(檐脊)에만 사용하였다.²¹⁾

琉璃는 서아시아 지방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여 大月氏에 의하여 중국에 전래되었다. 중국에서는 北魏 때부터 건축에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돈황석굴 벽화에 나타나는 建築圖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색채를 한 지붕기와가 나타나는데, 이를 두고 蕭默은 ‘보통기와’와 ‘유리와’의 사용을 구분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돈황석굴 벽화에서 유리와를 그린 벽화는 中唐 벽화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또 이 시기 벽화에 가장 많이 나온다. 唐 대명궁에서 출토된 初唐 시기의 유리와는 모두 녹색과 황색이며, 처마와 용마루에 사용되었던 것들이다. 당시 유리는 아주 귀중한 건축재료였으며, 오직 황실과 사묘에서만 사용되었다.²²⁾

우리나라에도 삼국시대 것으로, 예가 많지는 않지만 익산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녹유 서까래기와가 있고, 또 안암지에서 출토된 녹유 귀면기와가 있다.²³⁾ 녹유기와는 고구려 건축 터에서도 나왔다. “집안 12호 무덤에 그린 건물의 마루기와를 푸른 색으로 칠했는데, 이것은 록유기와를 이은 집을 그린 것이라는 것을 말해준다.”²⁴⁾ 따라서 ‘唐瓦’는 ‘막새기와’로 간주하기보다는 ‘처마, 추녀의 서까래기와, 귀면기와, 막새기와, 그리고 용

- 19). 北京市文物研究所 編: 『中國古代建築辭典』, 琉璃瓦, 115쪽.
- 20). 梁思成: 『清式營造則例』, 36쪽.
- 21). 北京市文物研究所 編: 앞의 책, 115쪽.
- 22). 蕭默: 『敦煌建築研究』, 240-2쪽. 유명한 唐三彩도 당시의 琉璃釉 기법이다.
- 23). 김성구: 『옛기와』, 34쪽.
- 24). 『고고민속문집』 9권, 110쪽; 리화선: 『조선건축사』, 68쪽에서 재인용.

마루기와로 사용된 高質의 기와'인 '琉璃瓦'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음으로 '獸頭'에 대하여 살펴보자. 獸頭는 짐승머리 형상의 기와를 일컫는 것으로, 고구려 고분벽화에도 보이는 '귀면와'·'수두'·'치미' 등으로 해석되어 왔다. 북한 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리화선은 『조선건축사』에서 "짐승머리 조각"으로, 北譯 『三國史記』는 "돌 또는 흙으로 짐승형상을 만들어 문 앞이나 지붕에 설치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²⁵⁾

『營造法式』 卷13 用獸頭等條에는 '獸頭'를 '正脊獸', '垂脊獸'로 구분하여 그에 대한 크기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기술된 내용으로 보아 '獸頭'는 '용마루(正脊), 내림마루(垂脊) 등에 사용되는 짐승 형상을 한 기와'를 뜻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²⁶⁾ 따라서, 옥사조에서 규정한 '수두'에 관한 조항은 5두품에서 백성까지는 용마루나 내림마루에 짐승 모양을 한 기와로 지붕을 장식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²⁷⁾

다음으로 지붕장식과 관련하여 나오는 '懸魚'의 해석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옥사조에 懸魚를 금하는 문구를 보면, 진골에 대하여는 '不雕懸魚', 6두품 이하에 대하여는 '不置懸魚'한다고 되어 있다. 지금까지의 해석은 이 두 문구에 대한 구별이 없이, 단지 지붕 박공부에 현어를 설치하지 못하는 것으로, 또는 현어로 장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다. 그러나 이 두 문구를 좀 더 세밀히 살펴보면, '不雕懸魚'와 '不置懸魚'는 지칭하는 내용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즉, 진골보다 신분이 높은 왕의 거처인 궁실에는 진골 신분에 금지된 호화로운 현어를 설치할 수 있는 반면, 진골은 현어를 설치는 할 수 있으나, 새김이나 조각을 한 호화로운 것은 설치하지 못하는 것으로(不雕), 그리고 6두품 이하는 현어 자체를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不置) 해석할 수 있다.²⁸⁾

25). 리화선: 위의 책, 180-182쪽; 北譯 『삼국사기』 하권, 152쪽.

II - 4. 構牙 · 花頭牙 等의 해석 문제

다음으로 옥사조에 나오는 6두품의 '重樑構牙', 5두품의 '重樑花斗牙', 4두품의 '構牙' 사용 제한에 나오는 이들 용어에 대하여 검토해 보자. 이 때까지의 해석을 보면, 이들 용어를 '重樑'·'構牙'·'花斗牙'로 구분하여 해석한 경우가 있는가하면, '重樑構牙'·'重樑花斗牙'·'構牙'로 해석한 경우가 있다.

'重樑'·'構牙'·'花斗牙'로 해석한 경우, '重樑'은 "들보를 중첩하여 놓는다는 뜻이므로, 대들보와 종보가 놓이는 오량집 架構를 한 집"으로 주로 해석하였으며, '構牙'는 '공포'로, '花斗牙'는 '화두아'·'초공' 등으로 해석하였다.²⁹⁾

그런데, 김정기는 '重樑構牙'를 '重樑'·'構牙'로 나누어 보지 않고, 하나로 묶어서 읽어서 "중첩된 두공 즉 이출목 이상의 공포"로 해석하였다.³⁰⁾ 또 신영훈은 4두품과 백성의 규제 내용에 '重樑構牙'가 아닌, '構牙'에 대해서만 규제한 것에 주목하여 '重樑構牙', '重樑花斗牙'를 '重樑'·'構牙'·'花斗牙'로 나누지 않고, 묶어서 읽으면서 '重樑構牙'는 '종보 없는 오량이상의 가구와 공아

- 26). 李明仲: 「營造法式」 卷13 用獸頭等條.
- 27). 五頭品의 "不置獸頭", 四頭品至百姓의 "不覆唐瓦".
- 28). 懸魚는 박공판이 용마루에서 마주치는 하부에 달리는 물고기나 草花形의 장식철물, 合闌部 정상에 수직으로 내려뜨린 魚尾形 장식으로 설명되고 있다.
- 29). 花斗牙의 해석에 있어서, 주남철은 「三國史記 屋舍條의 新研究」에서 화려하게 草 새김한 공포인지, 또는 柱間에 놓이는 花盤과 같은 것인지 확실하게 알 수 없다고 하면서, 그냥 화두아로 번역하였으며(388-389쪽), 김정기는 「三國史記 屋舍條의 新研究」에서는 화두아를 "초공 또는 익공과 같은 아주 약화된 두공의 일종"으로(93쪽), 「新羅의 住居生活」에서는 "초공"으로 해석하였다(227쪽). 신영훈은 構牙 용어에 착안하여 민도리집이나 굴도리집과 같이 공포없이 지은 집을 無構牙系라고 명명하여 해석하였다. 신영훈: 「無構牙系 建物의 一例」(446-447쪽).
- 30). 김정기: 앞의 논문, 92쪽.

의 결구, '重櫛花斗牙'는 '종보 있는 오랑가와 화두아의 결구'로 해석하였다.³¹⁾

표 2.를 통하여 명확히 파악할 수 있듯이 '櫛牙'와 '花斗牙'는 서로 대신하여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공포 용어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 차별성을 읽을 필요가 있다.

『영조법식』에 의하면, '華'는 조각, 단청하였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華'와 '花'는 같은 뜻으로 쓰였다. 그런데, 柱頭, 柱科, 柱斗는 그 용례가 서로 통한다. 그렇다면 '花斗牙'의 花斗는 斗에 장식을 가한 두공으로 파악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면, '花斗牙'는 『영조법식』에 나오는 '華頭子'일 가능성성이 크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화두자'라는 명칭은 첨차 하단의 兩卷瓣에 새긴 형상이 花瓣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졌다.³²⁾ 이 화두자는 下昂式 구조에만 있는 것으로서 下昂을 받치는 부재다. 육사조의 '화두아'를 '화두자'로 해석할 수 있다면, 통일신라시대에 하양식 구조를 한 건축이 있었음이 육사조를 통하여 실증된다. 이런 맥락에서, '화두아'와 달리 '공아'는 平坐를 한 두공으로 볼 수 있고, '중복공아'는 돈황석굴에 나타나는 初唐 제321굴에 보이는 2출목을 한 공포로 해석할 수 있다.³³⁾

따라서, 통일신라시대에는 적어도 櫛牙系의 공포와 花斗牙系의 공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육사조의 규제 대상으로 보아 그 위계 순서는 중복공아, 중복화두아, 단복공아 였을 것이다.

II - 5. 五彩의 해석 문제

육사조에 언급된 金銀·鑑石·白鑑·銅鑑 등 장식 단장에 관한 규정의 해석은 많은 연구자들의 견해가 서로 일치하고 있다. 다만 '五彩'의 해석에 있어서 견해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오채'는 '단청' 또는 '오색을 사용한 단청'으로 해석되어 왔다. 단청은 고구려 벽화에서도 발견되듯이 아주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온 것으로 조선조 때까지 일반 私家에서는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여 온 것으로, 청·적·황·흑·백의 5가지 색

31). 신영훈: 앞의 논문, 65쪽.

채를 지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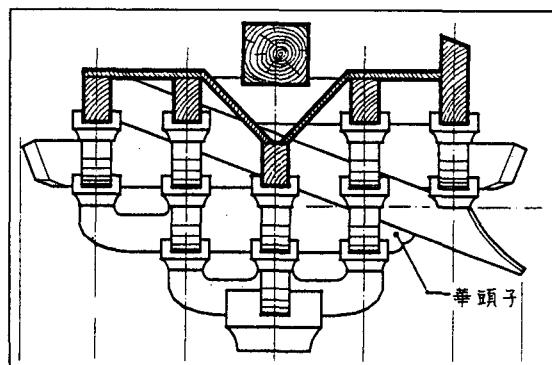


그림 2. 『營造法式』의 華頭子.

(출처 : 梁思成 : 『營造法式註釋』, 24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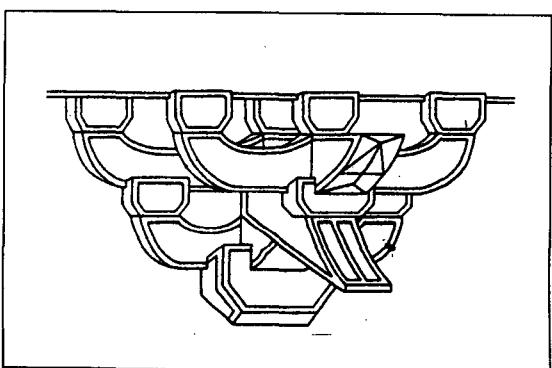


그림 3. 『營造法式』의 四鋪作科 構의 華頭子와 下昂.

(출처 : 李明仲 : 『營造法式』 卷34, 1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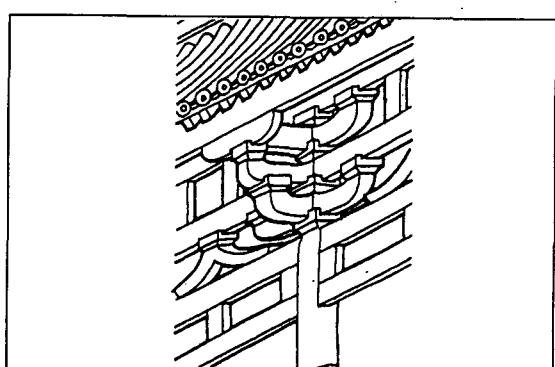


그림 4. 錄黃石窟 初唐 第321窟의 2출목 공포

(출처 : 蕭默 : 『敦煌建築研究』, 225쪽) 그

32). 徐伯安·郭黛垣: 『宋營造法式述語彙釋』, 38, 39쪽. 李明仲: 『營造法式』 卷四 飛昂條.

33). 蕭默: 앞의 책, 225쪽.

런데 신영훈은 五彩를 단청의 별칭으로만 해석한 종전의 해석과 달리, 4두품에 오채 장식을 금한다는 언급이 없음에 주목하여 오채를 ‘다섯 가지 색채’로 해석하여, 진골에서 오채를 금한다는 뜻은 ‘4채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였다.³⁴⁾ 그러나 「營造法式」이나 중국건축에서의 용례로 보아 ‘五彩’는 단청으로 봄이 타당할 듯하다.

II - 6. 階의 해석 문제

옥사조에 규정하고 있는 ‘階’에 관한 기준의 해석은 그것을 ‘기단’으로 보는 견해와, ‘계단’으로 보는 견해로 나뉘어져 있다.

예로서, 김정기는 ‘三重階’의 경우 ‘계단’을 지칭하는 것인지, 또는 ‘台階’를 지칭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3단의 계단”이 아니고 “그것은 이조 왕궁의 정전 등이 2층 또는 3층의 기단을 갖고 있고, 신라시대에도 왕궁의 중요 건물에는 3층기단이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삼중 기단’으로 해석한다.³⁵⁾ 반면, 주남철은 황룡사지 목탑지 발굴 남면에서 계단 3쪽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늘어놓은 것으로 판단된 예 등을 근거로 하여 “계단 세 폭을 나란히 놓은 것”으로 해석한다.³⁶⁾ 이들과는 달리 신영훈은 ‘삼중계’는 기단석을 3단으로 포개 쌓은 것으로, 즉 ‘세벌대’로, ‘이중계’는 ‘두벌대’로 해석한다.³⁷⁾ 다음으로, ‘巾階’에 대하여 김정기는 “난간 등 장식한 기단”으로 해석하였고,³⁸⁾ 주남철은 ‘소맷돌로 좌우를 꾸민 계단’으로 해석하였다.³⁹⁾

『釋名·釋宮室』에서는 “階 梯也 如梯之有等差也”라 하였고, 『漢制考·階』에서는 ‘堂塗’라고 하였다. 이들 문헌에서는 ‘階’를 높은 곳에 오르는 사다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는데, 그것은 곧 계단이다.⁴⁰⁾

옥사조에서 언급되고 있는 ‘三重階’·‘二重階’·‘巾階’ 등은 당시의 건축 모습을 보여주는 관련 벽화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고구려 고분벽화, 운강석굴, 돈황석굴 벽화에 나오

는 建築圖들이 좋은 참고자료가 되는데, 특히 집안 고구려 고분벽화와 돈황석굴, 운강석굴의 北魏時代 벽화는 상통하는 것들이다.⁴¹⁾ 이들 벽화에 보이는 건축도는 신라건축과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돈황석굴 벽화에 보이는 예로서, 隋나라 때의 벽화인 제433굴에는 주건물에 계단 두 틀이 있는 건축도가 있다. ‘二重階’란 이렇게 설치한 계단을 지칭하는 것 같다. 이런 맥락에서 中唐 벽화인 제361굴 남벽에 그려진 건축도를 보면, 전면의 중심 건물 기단에 ‘三重階’가 설치되어 있고, 후면의 중심건물에는 면석을 한 ‘이중계’가 있다. 이 이중계의 계단 사이에 보이는 ‘면석’⁴²⁾을 옥사조에서는 ‘巾階’라 지칭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이러한 형식을 한 계단은 中唐 제231굴에서도 보인다. 이러한 예는 돈황석굴 벽화 곳곳에 많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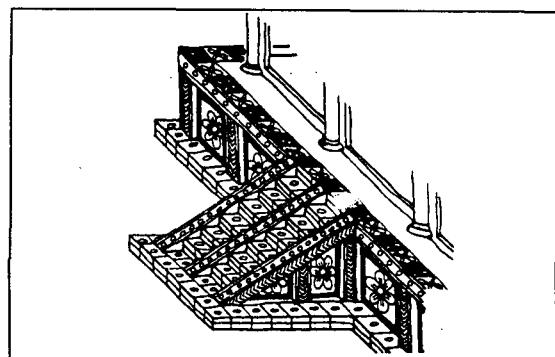


그림 5. 錄黃 榆林窟 中唐 제25굴 건축도의 ‘二重階’.

(출처 : 蕭 默 : 「敦煌建築研究」, 209쪽)

『釋名·釋宮室』에 나오는 ‘階’에 대한 어휘의 풀이와 돈황석굴 벽화에 나오는 그림들을 근거로 ‘이중계’와 ‘삼중계’의 계단 형식을 이상과 같이

35). 김정기: 「文獻으로 본 韓國住宅史」, 95쪽.

36). 주남철: 앞의 논문, 384쪽.

37). 신영훈: 「한국의 살림집」, 262쪽.

38). 김정기: 「新羅의 住居生活」, 227쪽.

39). 주남철: 앞의 논문, 387쪽.

40). 李國豪 主編: 「建苑拾英」, 455쪽에서 재인용.

41). 蕭 默 編: 「敦煌建築」, 26쪽.

42). 「營造法式」의 慢道.

34). 신영훈: 앞의 논문, 66쪽.

해석하게 되면, ‘階石’, ‘階砌’의 해석도 바로 된다. 즉 眞骨에서 “不磨階石”, 六頭品에서 “階石不磨”, 五頭品에서 “不磨階石”한다고 한 ‘階石’은 기단으로 오르는 ‘계단돌’로 해석이 되고, 四頭品至百姓에서 “階砌不用山石”한다고 한 ‘階砌’는 기단으로 오르는 계단돌 하나의 역할을 하는 ‘섬돌’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階砌不用山石”의 ‘山石’은 ‘산에서 채석한 돌’, 즉 ‘화강석’으로 볼 수 있고, “不磨階石”은 “기단 돌레의 맷돌과 계단돌인 섬돌은 다듬은 돌로 할 수 없다”로 해석할 수 있다. 예로서, 진골 신분에 ‘三重階’를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은 ‘삼중계’는 왕의 거처인 궁궐에서만 사용함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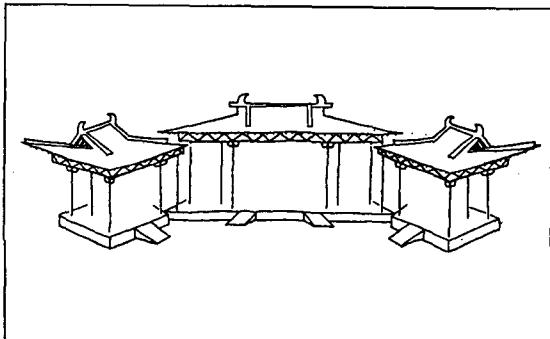


그림 6. 順皇석굴 벽화 隋代 제433窟 건축도 주건물의 ‘二重階’.

(출처 : 蕭 默 : 『敦煌建築研究』, 6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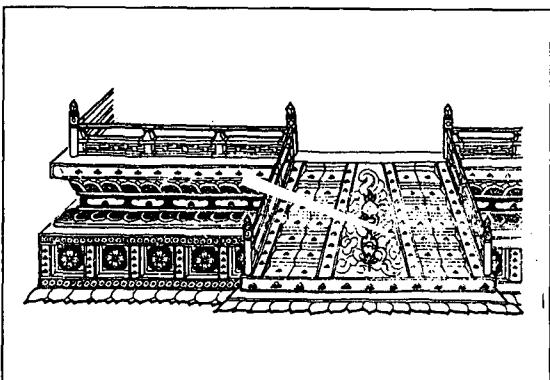


그림 7. 順皇석굴 벽화 中唐 제231窟 건축도의 ‘二重階’와 ‘巾階’.

(출처 : 蕭 默 : 『敦煌建築研究』, 21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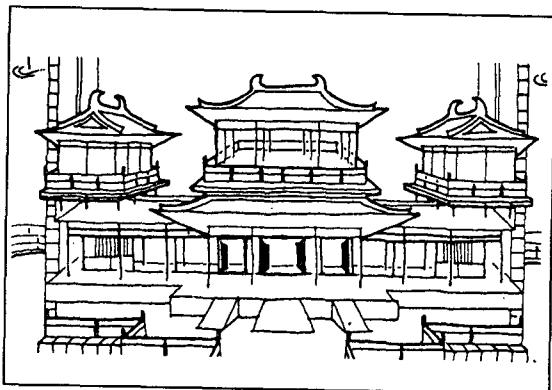


그림 8. 順皇석굴 벽화 中唐 제361窟

건축도의 ‘三重階’.

(출처 : 蕭 默 : 『敦煌建築研究』, 74쪽)

II - 7. 垣牆 · 梁棟 · 梁의 상관성에 대한 해석 문제

옥사조에 나오는 “垣牆不施梁棟”, “不架以梁” 등의 문구에서 ‘垣牆’·‘梁棟’·‘梁’의 상관 관계와 연관된 건축형상에 관한 해석은 연구자들 사이에 일치하지 않고 있다. 김정기는 “垣牆不施梁棟” 문구를 “垣牆에 보나 도리를 架構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찰의 회랑이나 궁전의 행랑 같이 만들지 못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 “垣牆을 회랑으로 하지 않는다”로 번역하였다.⁴³⁾ 그리고 “不架以梁”에 대해서는, “垣牆에 梁을 架構치 못한다”로 번역하고, 그것은 담장이 회랑 같은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담장에 기와를 잊고 그 밑에 보와 같은 圓木을 장식적으로 끈 것으로 해석하였다.⁴⁴⁾ 면, 주남철은 ‘梁棟’을 “조선시대의 궁궐 담장에서만 볼 수 있듯이, 담장 상부에 박공 기와 지붕을 하고 그 밑에 서까래 모양 등근 나무를 일정한 간격으로 수평으로 늘어놓아 마치 보(梁)를 걸친 것 같이 한 모습”으로, 그리고 5두품의 규제에 보이는 ‘梁’도 ‘梁棟’과 같은 뜻으로 해석하였다.⁴⁵⁾ 그런데, 옥사조에 나오는 이 문구를 해석하기

43). 김정기: 「文獻으로 본 韓國住宅史」, 95쪽; 「三國史記 屋舍條의 新研究」, 91쪽.

44). 김정기: 위의 논문, 각 97쪽, 94쪽.

45). 주남철: 앞의 논문, 389쪽.

위하여는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오는 전각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일찍이 신영훈은 이에 주목하여, 성곽도에서 성벽은 城廊을 표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해석하면서, 안악 제1호분 북벽 벽화에 보이는 행랑채 그림을 근거로, 垣牆의 梁棟을 살림집에서 담장에 의지하여 행랑채를 짓는 구조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⁴⁶⁾

그림 9.에서 알 수 있듯이 안악 1호분 전각도 회랑은 용마루가 架構된 회랑이다. 이러한 회랑은 집안 동대자에서 발굴된 고구려 집터에서도 볼 수 있다. 이 집터는 당시 지배계층의 건축 특징을 보여주는 좋은 예로서, “이 집자리를 통해서 고구려 귀족들의 집은 회랑으로 연결되는 여러 채로 이루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⁴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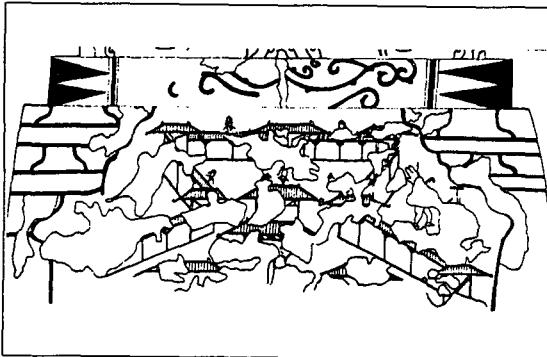


그림 9. 고구려 안악 1호분 전각도.

돈황석굴 벽화에서도 볼 수 있듯이 廊은 일종의 좁고 긴 건축물로서, 북위, 당나라 건축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구조체는 목조 가구를 하여, 한 쪽에는 담장을 하고, 다른 한 쪽은 안을 향하여 트이게 하였으며, 상부는 지붕을 이었다. 이러한 행각의 담장은 外牆이 된다.⁴⁸⁾ 돈황석굴 벽화 晚唐 제9굴 주택도를 보면, 행각을 한 담장이 있음을 알 수 있고, 宋代 제61굴에서도 담장을 끈 행각도를 볼 수 있다.⁴⁹⁾ 진골 신분에 “垣牆不施梁棟”한다고 규정한 것은, 곧 왕이 거처

46). 신영훈: 『한국의 살림집』, 250쪽; 「新羅統一期의 屋舍建築」, 54-67쪽에서는 벽을 끈 행각 가능을 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하는 궁궐에만 행각을 한 담장을 설치한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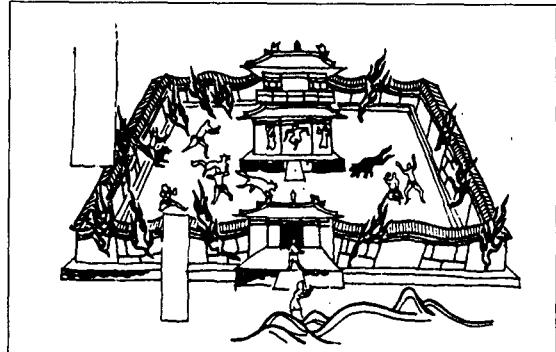


그림 10. 돈황석굴 벽화 宋代 제61굴 담장을 끈 행각도.

(출처 : 蕭 默 : 『敦煌建築研究』, 17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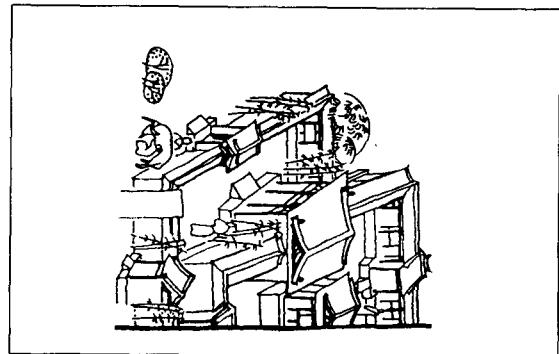


그림 11. 돈황석굴 벽화 晚唐 제9굴 주택도

(출처 : 蕭 默 : 『敦煌建築研究』, 182쪽)

II - 8. 실내치장 재료 및 용어의 해석 문제

진골의 “簾緣禁錦罽繡野草羅”, 6두품의 “簾緣禁罽繡羅”, 5두품의 “簾緣禁錦罽綾絹絛” 규제 조항에 나오는 ‘簾’은 안압지에서 출토된 발 고리로 통일신라시대에 발을 사용하였음이 입증됨으로서, ‘簾’은 ‘발’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상의 견해를 같이한다. 그런데, 발의 가장자리(簾緣) 장식인 것

47). 리화선: 앞의 책, 66쪽.

48). 蕭 默 編: 앞의 책, 11쪽.

49). 蕭 默: 앞의 책, 182쪽.

으로 판단되는 ‘錦罽繡野草羅’, ‘罽繡羅’, ‘錦罽綾絹縮’ 등에 대하여는 아직 정확한 해석이 내려지지 못하고 있고, 또 자구를 어떻게 띠어 읽어야 하는가에 대하여도 어려움이 많다.

표 1.에서와 같이 김정기·신영훈·주남철은 각각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데, 특히 주남철은 『삼국사기』 色服條에 보이는 錦羅·罽繡羅·野草羅 등의 용례를 근거로 하여 锦罽繡野草羅는 錦羅·罽繡羅·野草羅로, 锦罽綾絹縮는 锦罽縮·綾絹縮로 읽는다.⁵⁰⁾

옥사조 해석에 참고가 되는 『삼국사기』 色服條와 車騎條에 나오는 織物과 연관된 용어의 명칭을 보면, 絹(已下)·緜(已下)·綾(已下)·綾絹(已下)·絹布·羅緜絹布·綾緜絹·紗緜絹布·綾緜絹·緜絹緜絹布·緜緜絹布 등이 나온다. 이상의 용례를 통하여 絹·緜·綾·布·羅·紗·綿·紵 등은 각각 구분되는 다른 직물을 지칭함을 알 수 있다. 車騎條에는 또 眞骨은 “요는 능직과 견직 이하를 쓰며 . . . , 방식은 금 꽃 비단과 두 가지 색 능직 이하를 쓰고 가장자리는 비단 이하를 쓰며 . . .”⁵¹⁾라고 규제 조항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綾·絹·錦은 구분되어 사용된 직물임을 알 수 있다.

또 色服條와 車騎條에 나오는 獤羅總羅·罽繡錦羅總羅野草羅·罽繡錦羅布紡羅野草羅·罽繡錦綾羅虎皮·罽繡錦野草羅總羅·罽繡錦野草羅布紡羅·罽繡羅總羅 등의 용례에서 獤羅·總羅·罽繡錦羅·野草羅·布紡羅·罽繡錦綾羅·罽繡錦野草羅·布紡羅·罽繡羅 역시 각각 구분되는 다른 제품을 지칭함을 알 수 있다.⁵²⁾ 특히 옥사조에 나오는 제품들은 수입된 사치품일 것이므로 중국의 용례를 살펴보면 해석에 도움이 된다. 周錫保의 『中國古代服飾史』에 의하면, 明代에는 紵·絲·紗·羅·綾·綢·絹·帛 등의 의복 재료가 있었고, 清代에는 綾·錦·綢·羅·絹·葛·刻絲·衲紗 등의 의복 재료가 있었다고 한다.⁵³⁾

이러한 용례에 근거하여 옥사조의 簾緣禁錦罽繡野草羅·簾緣禁罽繡羅·簾緣禁錦罽綾絹縮는 锦罽繡野草羅·罽繡羅·錦·罽·綾·絹·緜로 봄이

50). 주남철: 앞의 논문, 385, 389쪽.

타당할 듯하다. 이를 바탕으로 옥사조의 규정을 분석하면, 4두품에서 백성에 이르는 신분의 사람은 위에 열거한 직물 어느 것도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 되고, 5두품에 대하여는 锦·罽·綾·絹·緜 등의 사용을 금하고 있고, 단지 布·麻·紵·葛과 같은 직물만 사용할 수 있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6두품은 锦·罽·綾·絹·緜 등은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중에서 獤繡羅는 사용할 수 없고, 같은 맥락에서 진풀은 锦罽繡野草羅를 제외한 다른 직물은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옥사조에는 簾緣에 관한 규정에 이어 병풍에 관한 규제 조항이 나온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5두품에서 백성까지는 병풍을 쓸 수 없다. 5두품에서 백성까지 신분 계층의 집 정침은 전면 너비가 각각 18척, 15척을 넘을 수 없다. 이 정도 크기의 건물이면, 실제로 방안에 설치하는 병풍의 사용이 중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기존의 연구 중에는 특히, 병풍·발의 사용과 室과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해석이 많았다. 옥사조의 조항을 근거로 당시의 방에는 발과 병풍이 쓰였으며, 발은 장식적인 기능, 그리고 장막과 발은 칸막이 노릇을 하였을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 발과 병풍은 장식재이면서 동시에 실을 편리한 크기로 나눌 수 있었을 것이다. 이와 연관하여 김정기는 병풍을 “바람을 막기 위한 가리개”로 해석하였고,⁵⁴⁾ 신영훈은 발과 방장으로 주간을 막고 실내는 아직 칸막이가 없는 단순한 평면으로, 그리고 바닥은 맨바닥이었을 것으로 해석하였다.⁵⁵⁾ 실내 칸막이를 발

51). “眞骨 . . . 褥子用綾絹已下 . . . 坐子用細錦二色綾已下 緣用錦已下 . . . ”

52). 『三國遺事』 卷 第2 紀異 第2 駕洛國記條에도 锦繡綾羅라는 직물 이름이 나온다.

53).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442, 510쪽. 周錫保는 각 직물에 관하여 “綾是文理細望之一若冰綾者, 錦是織采的, . . . 綢是密而細, . . . 羅是文理較粗疏者, 絹是絲織而無紋, 葛是以麻織, . . . 刻絲是貴重織物, 紗是絲織輕而薄者 . . . ”로 풀이하고 있다.

54). 김정기: 『三國史記 屋舍條의 新研究』, 91쪽.

· 병풍·장막을 이용하여 꾸민 실례는 고구려 고분벽화, 晉 顧愷之의 女史箴圖卷 등에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해석상의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床’에 관한 해석이다. ‘床’을 ‘침대’나 ‘침상’으로 해석하는 견해와, ‘바닥’이나 ‘널마루’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신영훈은 ‘床’을 입식생활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⁵⁶⁾ 이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고구려 벽화에서 볼 수 있는 상류사회 살림집에서 쓴 큰 건물 안에 작은 공간을 구성하는 법식을 소개하고 있고,⁵⁷⁾ 이러한 공간은 일종의 寢床과 같은 것을 이용할 때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⁵⁸⁾ 구들이 없는 맨바닥엔 신발을 벗고 올라앉을 床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⁵⁹⁾

『삼국사기』 잡지 車騎條에는 진골은 “수레 재목으로서 자단과 침향을 쓰지 못하며, 대모를 불일 수 없다.”⁶⁰⁾고 제한하고 있다. 실제로 침향·자단·황양 등은 “대단히 귀한 재료로써 넓은 마루바닥에 사용할 수 없는 목재이다 . . . 床이란 마루 바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마루 바닥이 아니라면,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많이 볼 수 있는 平床을 참고로 하면, 신라에서도 고구려와 같이 상류신분계급에서 평상이 권위의식의 상징이었으리라고 보이며 이 문헌의 床이란 바로 平床을 대상으로 함이 틀림없는 것이다.”⁶¹⁾

침향·자단 등은 床을 만드는 수입 목재였다. 그러한 목재를 수입할 때는 사용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5두품에서 백성까지는 아예 床을 쓸 수 없었다. 안악 3호분에는 평상(또는 좌상)에 앉아 있는 무덤 주인공의 생활 모습을 그린 벽화가 있고(그림 12.), 또 쌍영총에는 유막을 느린 상류 제택을 그린 벽화가 있는데, 주인 부부가 좌상에 앉아있는 그림(그림 13.)을 그렸다. 고분벽화의 건축도와 이상의 해석을 근거로 할 때, ‘床’은 일종의 ‘평상’이나 ‘침상’과 같은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55). 신영훈: 『한국의 살림집』, 254쪽.



그림 12. 고구려 안악 3호분 전실 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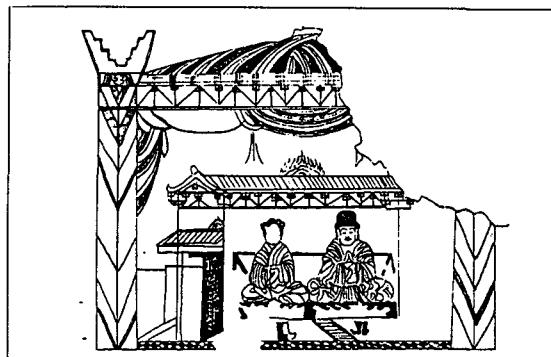


그림 13. 고구려 쌍영총 벽화의 상류제택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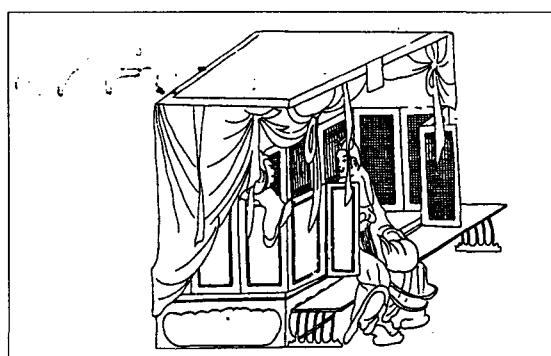


그림 14. 晉 顧愷之의 女史箴圖卷의 좌상, 병풍과 방장. (출처 : 劉敦楨 主編 : 『中國古代建築史』(第二版), 89쪽)

56). 신영훈: 위의 책, 86쪽.

57). 신영훈: 위의 책, 105쪽.

58). 신영훈: 위의 책, 108쪽.

59). 신영훈: 「新羅統一期의 屋舍建築」, 64쪽.

60). “眞骨 . . . 車材不用紫檀沉香 不得帖玳帽 . . . ”

61). 박언곤: 앞의 논문, 331-332쪽.

II - 9. 重門 · 四方門 · 大門의 해석문제

옥사조에는 ‘重門’ · ‘四方門’ · ‘大門’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다. ‘重門’은 外門과 內門이 있는 두 겹의 문인 ‘겹문’일 것이라는 견해와 ‘중층의 루문’, 또는 ‘다락문’과 같은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중문이 다락집형으로 된 예는 고구려 고분벽화와 돈황석굴 벽화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요동성도 · 용강대총 · 약수리 고분 · 삼실총 등에서 볼 수 있는 성곽도나 돈황석굴 벽화의 사묘의 문은 루문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문들은 기본적으로 第宅이라고 판단되는 살림집의 문이 아니다.

김정기는 ‘중문’을 ‘루문’으로 해석하지 않는 이유로 6두품에서 중문과 사방문이 금해졌고, 5두품 이하에서 대문과 사방문이 금해진 것은 6두품 이하의 주택에서는 주택 내부를 구획하는 내부 담장 등이 없고 필요한 건물만 여기 저기 배치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⁶²⁾

『說文』에서는 “樓 重屋也”라 하고 있다. 살림집에서 정문이 2층을 한 루문이면 내부의 건물도 2층이 되어야 그와 균형을 맞추게 된다. 그런데, 통일신라시대 살림집의 정침이 2층이었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重門’의 해석에는 『唐會要』에 나오는 규정이 참고가 된다. 『唐會要』에는 계택의 규모에 대한 규제와 함께 王公 이하의 사람은 어느 누구나 ‘烏頭大門’을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귀족(士) · 백성(庶)의 公私 · 第宅은 모두 樓閣을 만들어 가까이 있는 집들을 내려다 보아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⁶³⁾ 이 규정은 옥사조의 ‘중문’이 ‘루문’일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도움을 준다.

한편, 중문 · 대문 · 사방문의 건축형식에 관한 문제는 담장을 行闇으로 해석할 때 이 문제가 풀린다. 행각은 건물 주위를 둘러싸게 되고, 또 집의 규모에 따라 겹으로 둘러 쳐지게 된다. 이러한 행각에 설치되는 것이 중문 · 사방문이다. ‘중문’은 ‘루문’이 아니라 사랑채 · 행랑채 등에 겹으로 난 문이고, ‘사방문’은 회랑식을 한 집을 둘러싼

담장에 ‘사방으로 낸 문’이다. 돈황석굴 벽화 中唐 제231굴 남벽 중앙의 건축도, 晚唐 제85굴 서측 천정의 건축도를 보면 주전을 둘러싸는 회랑이 설치되어 있고, 사방으로 난 회랑의 중심에는 문이 나 있다. 이러한 형식의 문을 ‘사방문’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면, 옥사조의 ‘대문’은 ‘일종의 솟을대문’ 형식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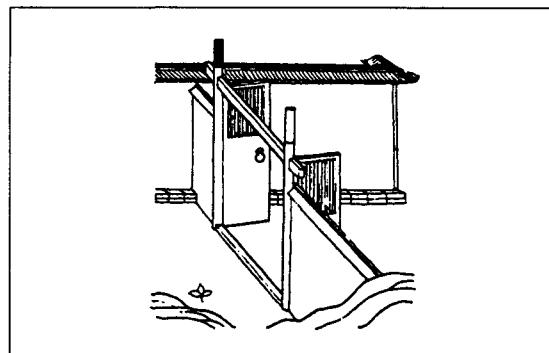


그림 15. 錄黃石窟 壁畫 初唐 시기의
烏頭門.

(출처 : 劉敦楨 主編 :
『中國古代建築史』(第二版), 16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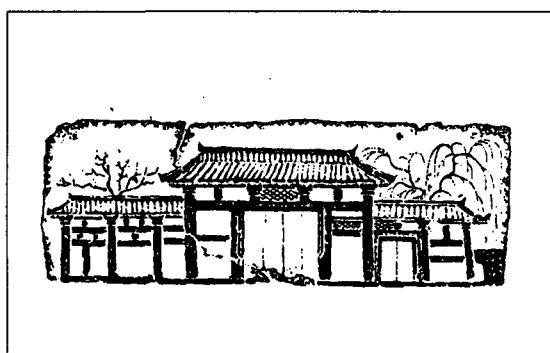


그림 16. 中國 四川 德陽 畫象磚의 漢代 大門
(출처: 劉敦楨 主編: 『中國古代建築史』(第二版), 51쪽)

62). 김정기: 「新羅의 住居生活」, 232쪽.

63). “王公已下 . . . 仍通作烏頭大門 . . . , 其士庶
公私第宅 皆不得造樓閣 臨視人家近者 . . . ” 『唐
會要』 卷31 輿服上 雜錄.

III. 결론 : 종합 정리

『三國史記』에서는 진골에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살림집을 ‘屋舍’라 부르고 있다. 그리고 옥사조의 가사제한령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나서 시대의 흐름과 같이하며 정립된 제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옥사조 해석의 쟁점이 되는 기존 주요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해석상 쟁점이 된 내용과, 그리고 기존 연구에서 크게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관련 자료들을 참고로 하여 새롭게 고찰하여 보았다. 먼저, 옥사조의 제정 시기 및 동기에 관하여는 통일신라시대인 홍덕왕 때에 이르러 문호개방 조치에 따라 사회가 신분상 혼란에 봉착하게 됨에 따라 통치질서를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론에서는 특히 옥사조 해석의 쟁점이 되는 부분들을 새롭게 고찰하였는데, 室長廣은 室長의 廣, 즉 室長의 寬度로 해석하였고, 唐瓦는 瓦當인 막새기와가 아니고, 당시 高質의 기와로 여겼던 核桃油한 기와, 곧 琉璃瓦로 해석하였다. 獸頭에 대하여는 용마루나 내림마루에 지붕을 장식하기 위하여 사용한 짐승 모양을 한 기와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지붕장식과 관련하여 나오는 懸魚 설치와 연관된 不雕와 不置를 구분하여 각각 새김이나 조각을 한 호화로운 것을, 또 현어 자체를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桁牙·花頭牙等의 해석 문제에 있어서는 重樑桁牙, 重樑花斗牙, 桁牙에 대하여 2출목 공포, 하앙식, 平坐를 한 두공 등으로 해석하고, 통일신라시대에는 적어도 桁牙系의 공포와 花斗牙系의 공포가 있었다고 해석하였다. 五彩는 「營造法式」이나 중국건축에서의 용례와 연관하여 단청으로 보았다. 그리고 階와 연관된 三重階·二重階·巾階 등에 관하여는 당시의 건축 모습을 보여주는 관련 벽화 등을 통하여 그 모습에 관하여 해석하였다. 또 垣牆·梁棟·梁의 상관성에 대한 해석 문제는 행각을 한 담장과 연관하여 해석하였다. 발의 가장자리(簷緣) 장식 직물에 대하여는 다른 용례에 근거하여

해석하여 보았다. 다음으로 해석상의 쟁점이 되고 있는 床에 대하여는 고분벽화의 건축도 등을 근거로 하여, 일종의 평상이나 좌상과 같은 것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重門·四方門·大門의 해석 문제에 있어서는 중문을 루문으로 해석하지 않고, 집의 규모에 따라 겹으로 둘러싼 문으로, 사방문은 회랑식을 한 집을 둘러싼 담장에 사방으로 낸 문으로, 그리고 대문은 일종의 솟을대문 형식으로 해석하였다.

이상의 해석을 바탕으로, 옥사조의 가사제한령을 보면, 살림집의 격식을 제한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서술 순서를 가지고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는 옥사조에서 각 신분별로 제한한 규정을 순서대로 나열해서 만든 표이다. 표 2에 의하면, 옥사조는 室의 크기, 즉 정침의 규모를 먼저 제한한 다음, 用材, 실내 천정 마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지붕장식, 기와의 종류, 처마, 그리고 공포의 형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정도면 기본적인 집의 외관은 잡히게 된다. 다음으로 제한하는 것이 세부 치장에 관한 사항이다. 金銀·鑑石·白鐵·銅鐵·五彩 등 장식에 관한 제한이 그것이다. 그 다음으로 제한한 내용이 계단과 담장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으로 규정한 사항이 실내치장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대문과 마굿간에 관한 규정은 가장 마지막에 있다. 대문은 집을 짓는 순서로 보아 중심 건축물들이 세워진 다음 만들게 되는 시설물이고, 마굿간은 부속건물이다. 옥사조는 특히 ‘室長廣’과 ‘床’에 관한 규제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것’(不得)으로 못을 박고 있고, 또 唐瓦·飛簷·懸魚·金銀·鑑石·五彩·階石·石灰 등에 관하여는 반복하여 모든 신분에 대하여 사용 못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러한 건축재료나 장식이 당시에 신분을 표시하는 중요한 수단이었거나, 고급품이었거나 또는 사치품이었음을 뜻한다.

옥사조의 규정을 가지고 당시의 살림집의 형태나 구조를 아직 정확하게 알 길이 없지만, 기본적인 형상은 어느 정도 파악된다. 기둥 위에 공포가

높이는 규정으로 보아 지배 계층의 살림집은 주로 목조 가구식 구조였을 가능성이 크며, 공포는 도리, 보의 받침으로 이미 통일신라시대 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집짓는 재목으로는 산유목을 제일로 썼던 것 같다. 또 실장광을 15자, 18자, 21자, 24자 등 3의 배수를 기본으로 하여 규제한 것을 볼 때, 자(尺)가 건축의 기본척도로 사용되었고, 기본 단위는 3자 또는 3의 배수였음을 알 수 있다.⁶⁴⁾ 이러한 단위의 적용은 신분에 따라 차등적으로 건물의 크기를 규정하고, 목재·가구·깔개⁶⁵⁾ 등의 규격을 규정하는데 유리하도록 하였을 것이다.

진골의 규정을 볼 때, 당시에 제대로 된 지배 계층의 살림집은 기단과 공포가 있는 집이었을 것이고, 지붕의 형태는 현어의 사용으로 보아 박공집이나 팔작집이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진골의 집만 하더라도 비록 공포가 있는 집이기는 하지만, 흘처마에 단청으로 장식을 하지 않은 집이었으며, 계단들은 다듬을 수가 없었고, 담장은 행각을 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진골 이하 신분의 집을 보면, 6두품 집은 진골에서 제한된 것을 사용할 수 없었음을 물론이고, 기단은 할 수 있으나 계단은 한 틀 만 설치할 수 있었고, 담장에 대문만 있는 집이었다. 5두품 집은 실내에 평상을 사용하지 못하였고, 4두품 집은 막돌을 사용한 기단이나, 토단 만 있는 집이었으며, 실내 치장도 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옥사조에는 정침의 규모에 관한 규정과 신분에 따라 구분되는 담장의 형상과 높이에 대한 규제, 그리고 문과 마굿간에 대한 규정을 제외하고, 다른 건물과 부속건물에 관한 규정이 안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옥사조는 당시 신분사회에서 살림집의 격과 연관되는 것에 대한 제한이 중요하였다고 볼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침 ·

64). 신영훈은 『韓屋의 造營』, 26-7쪽에서 室의 크기를 정한 수치인 15, 18, 21, 24척은 3으로 나뉘어지는 수 5, 6, 7, 8의 수리적인 사고가 뒷받침되어 있는 점에 대하여 해석하였다.

담장·문의 규모가 정해지면 다른 건물의 규모는 그에 따라 상대적으로 정해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옥사조의 내용으로 통일신라시대 살림집의 일반 내용과 규모를 제대로 추정하기는 아직 쉽지 않다. 더구나 당시의 이상적인 살림집의 모습이라던가 당시를 지배한 생각이 살림집에 어떻게 투영되어 나타났는가를 알기는 더욱 쉽지 않다. 비록 전통사회의 살림집의 규모와 장식은 그 시대의 신분상의 제약과 생산력을 포함한 경제적 여건이 잘 반영되어 있다고 하지만, 신분제도에 의한 가사제한과 그에 따른 주거생활의 양상이 어떻게 달랐는가에 대하여는 앞으로 더 고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또 「옥사조」의 가사규제 내용이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가사규제에 어떻게 계승되었는지에 대하여 고찰하는 것도 앞으로 남은 연구과제이다.

65). 『삼국사기』 권 제33, 잡지 제2, 車騎條에 의하면, 5두품까지 수레를 타고 다녔으며, 품계에 따른 장식품과 요, 방석 등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참 고 문 헌

- 金富軾 : 『三國史記』
- 一然 : 『三國遺事』
- 高裕燮 : 『韓國建築美術史草稿』, 1964.
- 金東賢 : 『한국목조건축의 기법』, 발언, 1995.
- 김성구 : 『옛기와』, 대원사, 1994(1992).
- 김성호 : 『중국진출 백제인의 해상활동 천오백년』, 맑은소리출판회사, 1996.
- 金正基 : 『文獻으로 본 韓國住宅史』, 『東洋學』 7집 (1977.), 79-105쪽.
- 金正基 : 『三國史記 屋舍條의 新研究』, 『三國史記 志의 新研究』,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집, 제2집, 경주시 : 신라문화선양회, 1981., 87-109쪽.
- 金正基 : 『新羅의 住居生活』, 『新羅社會의 新研究』,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 제8집, 서경문화사, 1991., 221-238쪽.
- 朴彦坤 : 『古文獻의 해석·고찰에 따른 建築史學 전개의 再考小論』, 『文化財』, 제20호 (1987. 12.), 325-333쪽.
- 申榮勳·金東賢 등 편저 : 『新羅의 기와』, 동산문화사, 1976.
- 申榮勳 : 『無構牙系 建物의 一例』, 『考古美術』, 9권 9호 (1968., 9.), 446-447쪽.
- 申榮勳 : 『三國史記에 보이는 屋舍條와 民家』, 『史學志』 제3집, 1969.
- 申榮勳 : 『한국의 살림집』, 열화당, 1983.
- 申榮勳 : 『新羅統一期의 屋舍建築』, 『考古美術』, 한국미술사학회, 162-163호 (1984. 9.), 54-67쪽.
- 申榮勳 : 『韓屋의 造營』, 광우당, 1987.
- 尹張燮 : 『韓國建築史』, 동명사, 1972.
- 李鏡列 : 『朝鮮前期 住宅史 研究』,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 張起仁 : 『韓國建築辭典』, 보성문화사, 1985.
- 朱南哲 : 『韓國建築意匠』, 일지사, 1990(1979).
- 朱南哲 : 『韓國住宅建築』, 일지사, 1980.
- 朱南哲 : 『三國史記 屋舍條의 新研究』, 『김원룡교수 정년퇴임기념논총』, 일지사, 1987, 381-392쪽.
- 리화선 : 『조선건축사』,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9.
-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 『고구려문화』, 사회과학출판사, 1975.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고전연구실 번역 : 『삼국사기』 上下, 1958. (北譯 『삼국사기』)
- 중판 : 도서출판 신서원, 1990.
- 『唐會要』
- 『大唐六典』
- 『周禮』 『考工記』
- 李明仲 : 『營造法式』
- 聞人軍 : 『考工記譯注』, 上海古籍出版社, 1993.
- 北京市文物研究所 編 : 『中國古代建築辭典』, 中國書店, 1992.
- 徐伯安·郭黛姮 : 『宋 营造法式述語彙釋』, 『建築史論文集』, 第六輯, 清華大學出版社 (1984.), 1-79쪽
- 蕭默 : 『敦煌建築研究』, 北京 : 文物出版社, 1989.
- 蕭默 編 : 『敦煌建築』, 中國 : 新疆美術攝影出版社, 1993.

- 梁思成：『清式營造則例』，中國建築工業出版社，1981.
- 梁思成：『營造法式註釋』卷 上，中國建築工業出版社，1983.
- 王璞子：『工程做法注釋』，中國建築工業出版社，1995.
- 劉敦楨 主編：『中國古代建築史』(第二版)，中國建築工業出版社，1984.
- 李國豪 主編：『建苑拾英』，上海：同濟大學出版社，1991.
- 周錫保：『中國古代服飾史』，中國戲劇出版社，1991(1984).
- 賀業鉅：『考工記管國制度研究』，中國建築工業出版社，1987(1985).

A Study on the Section of "Housing Regulations" in *The Chronicles of the Three States*

Lee, Sang Hae
(SungKyunKwan University, Professor)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Section of "Housing Regulations" in The Chronicles of the Three States (『三國史記』屋舍條) to verify the residential architecture during the period of the Unified Silla Dynasty.

Through the study, the basic architectural terms in the Section of "Housing Regulations", such as the size of the building, glazing roof tile, animal-shaped ornamental piece on roof ridge, eave purlin, wooden bracket arms, roof decoration, decorative paintings, stone steps, wall structure, blind screen, folding screen, bedstead, and gate are analyzed, interpreted and defined, and, in addition, the forms and styles of the residential architecture during the period of the Unified Silla Dynasty are basically reconstructed.